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적 책임

# 인공지능과 저작권·특허권

2022733029 권유진

# 목차

## ICT와 지적재산 환경의 변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 인터넷 이용자의 변화 / 저작권 저축여부

##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손담비 모방 UCC / 저작물의 복제·전송 / 패러디 / 기본권 충돌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법적 책임

Viacom v. Youtube 사건 / 우리나라 OSP 판결 / 저작권법의 변화

##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사건의 경과 / 판결의 내용 / 정리

## 인공지능과 저작권·특허권의 미래

AI 창작물의 보호 / 빅데이터 저작권 / 알고리즘 특허

## 결론

표현의 자유와 법적 책임의 공존

# ICT와 지적재산 환경의 변화

I

##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권리로,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달리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ICT 환경이 발전하면서 두 권리가 서로 교차하는 상황이 많아지고, 이로 인한 새로운 갈등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II

## 인터넷 이용자의 변화

과거에는 콘텐츠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데 그쳤던 이용자들이, UCC·SNS 등의 확산으로 직접 창작하고 배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III

## 저작권 저축 여부

디지털 파일은 원본과 동일한 품질로 무한히 복제할 수 있어, 기존 저작권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도전을 제기합니다. '저작권 소멸'을 논하기보다는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보호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 손담비 모방 UCC 사례 분석

### (1) 저작물의 복제·전송

방송사 뮤직비디오를 모방·재편집한 UCC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교육·보도·패러디 등 일정한 경우에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면 사적 이용 예외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3)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은 허용되지만, 모방 UCC는 단순한 인용을 넘어 저작물 자체를 핵심 내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인용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 (4) 법원의 결론

법원은 해당 UCC가 복제권·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비영리·개인 표현 목적이라는 점 등 정상참작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최종 처벌 수위를 결정하였습니다.

# 패러디와 기본권 충돌 문제 해결

1

## 패러디의 법적 지위

패러디는 원작을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창작적 표현 방식입니다. 저작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비평 목적의 인용 조항과 공정이용 법리를 통해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

## 기본권 충돌 구조

저작권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과 창작자·이용자의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우선하지 않으므로, 비례 원칙에 따라 두 권리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 법원의 판단 기준

① 원작의 핵심 부분을 어느 정도 사용했는가, ② 비판적·창작적 변형이 이루어졌는가, ③ 원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 이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패러디 허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의 저작권법적 책임

## 단순 도관

이용자의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OSP가 전달 내용을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 캐싱

자동으로 정보를 임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표준 기술 절차를 준수하고 원본 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호스팅

이용자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하고 제공하는 역할입니다. 침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삭제 요청을 받은 후에도 해당 콘텐츠를 방치하면 OSP도 책임을 집니다.

# Viacom v. YouTube 사건

1

## 1심 판결

뉴욕 연방지방법원은 YouTube가 DMCA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Viacom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OSP가 구체적인 침해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면책이 인정된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2

## 2심 판결

제2 순회법원은 '적기 인식(red flag knowledge)' 기준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YouTube가 일반적인 침해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직접적 재정 이익'과 '통제 능력' 요건에 대한 재심리를 명하였습니다.

3

## 파기환송심 결론

파기환송 후 법원은 YouTube의 면책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OSP가 침해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였다면 DMCA상 면책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칙이 이 사건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 우리나라 OSP 책임 판결 및 저작권법의 변화

## 우리나라 OSP 책임에 대한 판결의 검토

● 대법원은 OSP가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었던 경우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합니다.

● 방조 책임 성립요건: ① 침해 사실 인식 ② 기술적 조치 가능성 ③ 이익 귀속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통보·삭제(notice and takedown)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침해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 저작권법의 변화

### (1) 빅데이터의 저작권법 보호

빅데이터 자체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데이터를 수집·선별·배열하는 과정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공백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완하는 추세입니다.

### (2) 민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이 규율하지 못하는 영역은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완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의 무단 취득·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 사건의 경과

2011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을 제소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디자인 및 UI 관련 특허 침해를 주장하였고, 삼성도 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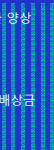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약 10억 5천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특허 배상액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2013~  
2015

항소심에서 배상액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제품별 디자인 침해 인정 여부가 심급마다 달라지는 등 복잡한 양상이 이어졌고, 특허 무효 심판도 병행하여 진행되었습니다.

2018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미국 내 소송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애플은 최종적으로 약 5억 3,9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 판결의 내용과 정리

## 판결의 핵심 쟁점

- ① 스마트폰 등근 모서리·아이콘 배열 등 디자인 특허의 보호 범위
- ② '탄성 스크롤(bounce-back)' 등 기능 특허의 침해 여부
- ③ 표준필수특허(SEP)의 FRAND 조건 준수 의무

## 한국·독일 등 해외 결과

한국 법원은 양측 모두의 일부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비교적 균형 잡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 뮌헨 법원은 삼성 일부 제품의 판매 금지를 명하는 등 국가별로 결과가 크게 달랐습니다.

## 판결의 내용

미국 법원은 삼성의 디자인 특허 및 기능 특허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디자인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인 관찰자'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정리 —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IT 기업 간 특허 포트폴리오 경쟁을 촉발시켰으며, 디자인 특허와 소프트웨어 특허의 보호 범위에 관한 법리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나아가 FRAND 의무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인공지능과 저작권·특허권의 미래

A

##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현행법은 저작권을 '인간 창작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AI가 자율적으로 생성한 그림·음악·텍스트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미국 저작권청은 AI 단독 생성물에 대한 등록을 거부하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B

## 빅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침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상업적 목적의 학습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C

## 알고리즘·AI 발명의 특허 가능성

유럽특허청(EPO)과 미국 특허청(USPTO)은 AI 시스템(DABUS)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AI의 발명 기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의 입법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판례 및 법리 비교

구분	형사법 적용	민사 구제	주요 법리
저작권 침해 (사실 적시)	저작권법 제136조 2년 이하 징역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의거성 + 실질적 유사성 2요건
사이버 명예훼손 (OSP 연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7년 이하 징역	불법행위 손해배상 (OSP 공동책임)	통보·삭제 미이행 = 방조책임
특허 침해 (스마트폰 전쟁)	형사처벌 드물음 (행정고발 병행)	손해배상 + 판매금지 가처분	균등론 + 디자인 혼동가능성 기준
AI 창작· 특허 발명	현행법 공백 (논의 중)	보호 공백 (입법 과제)	인간 창작자 원칙 vs 기술 발전 요구

## 결론

# 지식재산권과 기술 혁신의 공존

### ▶ 저작권은 창작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도구

온라인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러디·인용·TDM 등 공정이용 법리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 ▶ OSP 책임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합니다

통보-삭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 AI 콘텐츠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면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AI 창작물의 권리 귀속, 빅데이터 학습의 적법성, AI 발명의 특허 가능성 등은 아직 입법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급한 과제들입니다.